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신설 등 〉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4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원회 구성 확대	2
2.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신설	7
3. 정부의 희생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 의무 신설	15
4. 과거사연구재단 사업 범위 확대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5.
3. 회 부 일 :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토론을 보장하고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신설, 제36조 및 제40조).

Ⅲ. 검토의견

1. 위원회 구성 확대(안 제4조)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u>9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13명</u>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u>8명</u>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u>구성한다</u>)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 ----- <u>10</u> <u>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대통령이</u> <u>임명</u> ----- ----- <u>구</u> <u>성한다</u>),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 <u>을</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하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음.

그러나, 출범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당한 진실규명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일부 위원의 편향된 역사인식과 특정사건을 바라보는 위원들 간 이념 및 관점의 차이 등에 따라 일부 관련 사건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토론이 무시되고 갈등과 잡음이 노출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시도하려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일정 부분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추천 또는 지명권자 및 인원이 1기 위원회에 비해 축소되어 다양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추천권자에 1기 위원회와 유사하게 대법원장을 추가하고 인원 역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345건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의 지시로 소위원회 심의 전 보류된 바, 상임위원이 소위원회 안건 상정건을 남용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의 취소를 둘러싸고 여당 추천위원과 야당 추천위원이 갈등을 빚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된 바 있음.

진실화해위원회 앞 “역사 정의 외면 김광동·황인수 나가라”. 뉴스클레임, 2024. 6. 25.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590>

민간인 학살 345건을 심의도 못 하게 보류한 진화위 상임위원, 한겨레, 2025. 2. 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480.html

진실화해위 ‘내홍’ 격화…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취소 놓고 충돌, 뉴스1, 2024. 11. 19.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05149>

<2기 진실화해위원회 제2대~제3대 위원장 시기 위원 구성 현황>

지위	제2대~제3대 위원장 시기		
	성명(임명방식)	경력	재임기간
위원장	김광동(대통령)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22-12-10~2024-12-09
	박선영(대통령)	(사) 물망초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전 동국대 교수	2024-12-10~2026-12-09
상임 위원	이옥남(국민의힘)	(사)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전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홍보 담당관	2023-04-24~2025-04-23
	이상훈(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2023-04-24~2025-04-23
비상임 위원	김웅기(국민의힘)	창원대 교수 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자문위원	2023-05-30~2025-05-29
	오동석(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2023-04-24~2025-04-23
	이상희(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전 가슴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	2023-04-24~2025-04-23
	장영수(국민의힘)	고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상임이사	2023-09-04~2025-09-03
	차기환(국민의힘)	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23-04-24~2025-04-23
	허상수(더불어민주당)	재경 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공 동대표 전 한국전쟁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 민위원회 운영위원장	2023-11-13~2025-11-12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 4명을 추가하되,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1기 위원회, 2기 위원회 및 개정안의 위원회 구성 비교>

		1기 위원회	2기 위원회		개 정 안
지명·선출권자		위원 수(상임위원 수)	위원 수(상임위원 수)		위원 수(상임위원 수)
- 대통령 지명		4명(2명)	1명(1명)	→	1명(1명)
- 국회 선출	국회의장	-	-		2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명(1명)	4명(1명)		4명(1명)
	그 외 교섭단체	4명 ²⁾ (1명)	4명(1명)		4명(1명)
- 대법원장 지명		3명	-	→	2명
계		15명(4명)	9명(3명)		13명(3명)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원 구성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현행법 심사 과정(제371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구성 방식(전체 위원 수 대비 그 외 교섭단체 추천 위원 수 비율: 약 26.67%)보다 현행 진실화해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³⁾ 등의 방식(전체 위원 수 대비 그 외 교섭단체 추천

2)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나라당이 3인(그 중 1인이 상임위원), 통합진보당이 1인을 추천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통합민주당이 3인(그 중 1인이 상임위원), 자유선진당이 1인을 추천하였음.

3) 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됨.

위원 수 비율: 약 44.44%)이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⁴⁾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위원 구성 경로 다양화에 따른 진상규명 추진의 장점, 위원 구성 경로 다양화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20., 의안번호 제2978호)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려는 바, 개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확대 및 위원 지명권자의 경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4)

○윤재옥 위원: 우리는 이 조항 자체가 최근에 국회에서 구성한 다른 위원회의 구성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근에 5·18진상규명위원회도 그렇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 구성으로 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에도 국회의장이 1명이고, 대통령 소속 정당이 4명, 그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돼야 한다는.....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사의 아픈 부분을 우리 전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숫자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저는 저희 상임위 법안이 향후 숫자로 넘어가고 법사위, 본회의 등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우려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위원회의 구성 이 부분이 지금 누가 봐도..... 여기 15인의 위원을 국회가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공평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협의해서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진전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신설(안 제7조)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생략) <u><신설></u> 1. ~ 5. (생략) ③ ~ ⑤ (생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헌법 제6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수행함.⁵⁾

5)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탄핵소추 관련 헌법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헌법 및 개별법 상의 탄핵소추 가능 대상 및 근거>

구 분	대 상	근 거
헌 법	①대통령 ②국무총리 ③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④헌법재판소 재판관 ⑤법관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⑦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⑧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개별 법률 - 직접적인 근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제16조제5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개별 법률 - 간접적인 근거 (해임사유, 신분보장 조항)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검사징계법」 제24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무직공무원(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대

표하고 사무처장을 지휘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가지는 등 위원회 및 그 산하조직의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책임이 크다고 하겠음.

개정안은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원장 및 위원회의 합헌적이고 합법률적인 직무수행에도모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 업무 권한	근거규정
위원회 대표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업무를 통할	
대통령에 대한 의안제출 건의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위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유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의결을 한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위원 면직 제청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회 회의 주재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사무처장 지휘	제14조(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장 임명 관한 제청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 임명 제청	
사무처 4급 이하 공무원 임명	
자문기구 구성원 위촉권(위원회 의결 필요)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증인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검증실시통보서 발부(위원회 의결 필요)	제24조의3(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24조의7(검증)
공무원 파견근무 요구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과태료 부과	제47조(과태료)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당연퇴직 사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면직 찬성 의결을 받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면직 사유)가 아니면 당연퇴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민주적·대의적 통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⁷⁾

아울러, 탄핵근거규정이 도입된다면, 동법상 위원의 결격사유에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신분보장 규정 등 비교>

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위원회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신분 보장 및 면직 제한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 6)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임.(1996. 2. 29. 선고 93헌마186)
- 7) 참고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는 「경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것인데, 그 사유는 ‘임기제 도입에 대한 통제수단 보완 필요성’임.
 [“경찰청장의 임기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 통제수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경찰법중개정법률안(김무성의 원동 67인, 제162349호) 심사보고서」]

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위원회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가 확정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결격 사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5. (생략)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 (생략)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6.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탄핵 소추 근거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④ (생략)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④ (생략)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면직사유 및 결격사유⁸⁾ 규정에 따라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그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직에서 면직되거나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가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⁹⁾ 등 주요 합의제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기관장에 대한 탄핵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한 국가기관도 다수 존재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마련 여부는 탄핵의 필요성, 직위의 중요도,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20., 의안번호 제2978호)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근거를 규정하려는 바, 개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6의4·7·8. (생략)
- 9)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개별법에서 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여타 한시적 위원회의 사례와 비교할 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을 두는 것은 이례적이라 볼 수 있으나,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3. 정부의 희생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 의무 신설(안 제36조)

개정안은 정부가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u>피해</u>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u>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u>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생략)	제36조(<u>피해보상</u> 및 명예회복) ① -- ----- ----- <u>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을</u> -----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법은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은 진상규명의 후속조치로 보상을 명시하고,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엄

격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입증문제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줄 수 있고, 소송 제기 후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동시에 개정안은 일괄 보상 입법을 통해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원칙과 기준 적용이 가능하고, 단일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족회 등 관련단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지연되어 법 제정 및 시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의 재정적 부담 가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점, 사건 범주별로 피해·희생의 원인 또는 유형에 따라 금전지급의 기준 및 방식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보상 기준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나 관련자를 위하여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보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법률로 명시할 경우 기준 마련 이후 신속한 법률 개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이나 근거 등은 법률에 규정하더라도 보상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이상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12., 의안번호 제2728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병합심사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이상회의원안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12. 19., 의안번호 제6737호)은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배상과 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6개월 이내에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바, 개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 및 유가족이 입은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피해보상 기준을 법률로 정할 경우 이후 사정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피해보상의 대상·근거·방법 등 중요한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과거사연구재단 사업 범위 확대(안 제40조)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 범위에 과거사 추모일 지정, 추모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료관의 설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u>운영·관리</u>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 ----- <u>설치·</u> <u>운영·관리</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③ ----- -----.
1. <u>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u>	1. <u>과거사 추모일 지정, 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 위령탑 건립 등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운영·관리</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¹⁰⁾은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단의 사업으로 ①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②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③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④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위령사업’을 ‘과거사 추모일 지정, 추모공원 조성·운영·관리 및 위령탑 건립 등의 위령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사료관의 운영·관리에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추진사업의 구체화 및 확대를 통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위상 정립 및 위령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과거사연구재단 사업>

제40조제3항	현행	개정안
1호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과거사 추모일 지정, 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 위령탑 건립 등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설치·운영·관리
2호	추가 진상조사사업 지원	좌동
3호	진상규명 관련 문화, 학술활동 지원	좌동
4호	그 밖에 필요 사업	좌동

다만, 과거사 추모일 제정을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에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추모일은 ‘국가기념일로서의 추모일’을 의미하

-
-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국가기념일의 경우 「각종 기념일 등에 의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거나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정·운영됨을 고려할 때 과거사연구재단의 업무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기념일>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7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2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8	6·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3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9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4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10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5	4·19혁명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11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국가보훈부
6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총 57개로, 이 중 과거사 관련 기념일은 11개임.

※ 개별법에 규정된 기념일은 총 76개이며, 그 중 과거사 및 민주화 관련 기념일은 없음.

또한, 위령사업과 관련하여 1기 진실화해위원회(2010년 12월 31일 활동 종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발굴과 안장,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대전광역시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이 건립 중이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 사업주체 : 행정안전부(총괄) / 대전광역시 동구청(시행)
- 사업기간 : 2018 ~ 2025 (8년)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2-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역사공원 조성 등(사업부지 101,023㎡, 건물연면적 3,931㎡)
- 총사업비 : 591.56억원

참고로, 현재까지 과거사연구재단은 설립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1기 위원회는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¹¹⁾를 통해 과거사연구재단(가칭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촉구하였고, 2기 위원회도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2024년 11월 5일 제90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화해재단 설립 정책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음.¹²⁾

한편, 우리 위원회에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1., 의안번호 제2473호)은 정부가 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 전에 진실화해재단을 설립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진실규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이

11)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12) 정부와 국회에 진실화해재단 설립 정책 권고(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2024. 12. 4.)

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0&nttId=322752

필요한바, 재단 설립을 위해 국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